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65
------	------

2021. 04.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6일, 이태성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4.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태성 의원)

1. 제안이유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공급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도매시장 유통기능의 전문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한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조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

과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도매법인의 지정과 상한수, 재지정, 자본금 규모, 도매법인의 관리와 경매사 관리, 금지행위,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과 장려금,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14조)
- 다. 시장도매인의 지정, 상한 수, 자본금 규모 등을 규정함(안 제 15조~제18조)
- 라.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허가·신고, 중도매인의 상한 수, 갱신허가, 보조거래참가자 운영, 시설사용면적, 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6조)
- 마. 산지유통인 등록과 등록 예외, 출하자 신고, 출하예약 우대 조치, 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 수탁거부, 구매자신고, 구매자신고 우대 조치, 미신고 구매자 제재 등을 규정함(안 제27조~제35조)
- 바. 도매법인의 거래, 매매방법,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거래정보 보고, 거래 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거래특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특례, 판매원표 등 관리, 대금정산조직의 운영방법 및 관리, 도매업무의 대행, 하역업무, 출하자 손실보전금, 관계인의 영업제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반입물품의 제한, 거래단위, 거래관계자의 표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을 규정함(안 제36조~제55조)

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6조~제58조)

아. 도매시장 시설사용, 시설의 전대금지, 시설사용의 규제, 대집행 및 보수명령, 위생·환경유지, 재해시의 물품확보, 처분제한, 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의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59조~제66조)

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의 보고, 검사 및 명령, 관련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67조~제69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공정성·투명성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발의되었음.

나. 도매시장 운영현황

-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 12개사(가락시장 9, 강서시장 3), 시장도매인 60개사(강서시장), 중도매인 2,019명(가락시장 1,734, 강서시장 285), 매매참가인, 직판상인 등 약 1만 5천여 명의 유통인이 농수산물 유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도매시장별 도매법인 등 유통인 현황 >

구분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직판상인			
			소계	청과	수산	양곡	소계	청과	수산	소계	청과	수산	축산
총계	12	60	2,019	1,573	446	0	202	165	37	770	441	229	100
가락시장	9	-	1,734	1,288	446	-	186	149	37	770	441	229	100
강서시장	3	60	285	285	-	-	16	16	-	-	-	-	-

- 이 중, 가락시장은 2020년 기준 약 237만여 톤(1일 7,755톤) 규모의 농수산물 거래를 통해 서울 시민이 소비하는 농수산물 소요량의 49%,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도매시장 현황 >

도매시장명	개장	취급부류	1일 취급물량	비고
가락시장	1985.6. 19.	청과, 수산	7,755톤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
강서시장	2004.2. 25.	청과	2,038톤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

다. 발의 배경 및 조문 구성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는 1974년 제정 이후 모두 26차례의 직접적인 개정(타법 개정 제외)이 있었지만, 여전히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농안법령」 도매시장 관리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거래제도 다양화와 유통인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음.
- 개정안은 「농안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9장 69조로 상세화 하였음.
 - 용어의 정의, 도매시장 관리, 도매법인의 거래, 사용료와 수수료 등 5개 조문이 신설되었음.
 -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 경매사 금지행위, 중도매인 상한 수, 하역업무 등 7개 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되었음.
 - 이 밖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재지정요건 강화,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의 상향,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등 도매

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유통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음(참고자료 1).

< 개정안 주요 조문 개정 내용 >

구 분	주요 조문
신설 조문	용어의 정의(2조), 도매시장 관리 등(3조), 준용(제24조), 도매법인의 거래(36조), 사용료 및 수수료(55조)
시행규칙에서 이동	도매시장 상한 수(6조), 도매법인 자본금 규모(8조), 경매사 금지행위(11조),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16조, 17조), 중도매인 상한 수(20조), 하역업무(60조)
조문 보완 및 명확화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재)지정(3조, 7조, 18조), 장려금 등의 지급(13조), 보조거래참가자 운영(22조), 매매방법(37조),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38조),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특례(44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51조), 시설사용의 규제(61조) 등

- 이처럼 도매시장 관리 전반에 대해 조례 중심의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재인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

1)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기록상장, ▶허위거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음.
- 이 중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은 시장개설자가 농수산물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상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함.
-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법인의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장하지 아니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은 「농안법」의 상장예외품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정의한 것이나, 「농안법」과 도매시장에서는 ‘비상장품목’이나 ‘상장예외품목’으로 통용되고 있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법률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 상호간에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도매시장의 관리 등(안 제3조 신설)

- 안 제3조는 서울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공사로 규정하고,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있음.
- 「농안법」 제21조²⁾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는 설립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농안법」에서는 시장관리자에게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부여하고 있고, 운영 주체는 도매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으로 나누어서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분리하고 있음(제22조³⁾).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주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시장관리자는 개설자가 위임한 관리업무로만 업무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음.

2) 도매법인(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도매법인의 지정, 상한 수, 재지정, 자본금 규모, 경매사 관리, 금지행위, 시설사용면적과 장려금, 전자거래와 견본 거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1) 도매법인의 지정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도매법인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제1항),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며(제2항), 도매법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제3항).

현행	개정안
<p>제3조(지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p> <p>②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p>	<p>제5조(도매법인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법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삭 제></p>

현행	개정안
<p>③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u>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③ <u>도매법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도매법인의 지정과 유효기간은 「농안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⑤ (생략)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매법인의 지정·승인에 대한 사항(제2항)은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도매법인의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과도한 수익추구를 억제하고, 유통주체 간의 경쟁 촉진,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러나 공사의 기본 업무인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도매법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지정·승인조건으로 인한 시장관리자의 행정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음.

(2) 도매법인의 상한 수(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도매법인의 상한 수를 [별표] 로 정하고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실태, 도매법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매법인의 상한 수 >

시장명	부류별	상한 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6개
	수산물부류	3개
	축산부류	1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1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양곡부류	3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부류	1개

- 현재는 도매법인의 상한 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도매시장의 독점적인 유통주체인 도매법인의 관리에 대한 시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다만,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해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제23조).

- 또한, 도매법인 등의 적정 수는 업무규정으로 하고(법 시행규칙 제16조), 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법 제17조).
- 최근 들어 도매법인 등의 수를 정한 조례가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규정인 조례가 불승인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됨.
- 한편 1986년 개장한 축산물공판장이 2011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면서 가락시장 내에 축산부류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표 1] 과 [별표 2] 의 축산부류 유통인의 상한 수와 자본금 최소규모는 각각 삭제되어야 함.

(3) 도매시장의 재지정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농안법」 제8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일정 횟수 이상 받은 경우에 재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u>제4조(재지정)</u>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u>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u> 2. <u>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u> 3. <u>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u> <p>4. <신 설></p> <p>5. <신 설></p>	<p><u>제7조(도매법인의 재지정 등)</u> ①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u>도매법인</u>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도매법인의</u>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u>법 제23조제3항 등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과 이 조 제5조제2항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도매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부진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u> 2. <u>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도매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u> 3. <u>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해당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u> 4. <u>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u> 5. <u>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22호 및 제24호 중 동일한 위반행위로</u>

현행	개정안
<p>6. <신 설></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u>재지정하지</u>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u>법인</u>을 지정할 수 있다.</p>	<p>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및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u>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u>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u>도매법인</u>을 지정할 수 있다.</p>

- 안 제2항제1호부터 안 제2호까지의 재지정 요건은 「농안법 시행규칙」의 지정취소사유(제15조의2)를 적용하였고, 제3호는 대구광역시 조례를 참조해 지정조건의 위반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음.

-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농안법」 제82조제2항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3회~5회 받은 경우 재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상의 규정은 농수산물의 독점적 수탁판매, 가격결정, 거래대금 정산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도매법인이 지정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안정성, 공익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는 “재지정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농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음.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나(「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강행규정화 하고 있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음.

(4)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별표 2]로 정하고(제1항), 도매법인의 거래보증금 납부와 반환, 순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제3항).
 -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조례로 상향하면서, 금액은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

시장명	부류별	자본금 규모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50억원
	수산물부류	50억원
	축산부류	30억원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50억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양곡부류	30억원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부류	50억원

- 이는 도매법인 지정과 운영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본금의 규모를 조례로 정하여 도매법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음.

- 다만,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외에도 거래보증금, 순자산액 비율 등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본금 규모만을 업무규정 성격의 조례로 정하고 거래보증금과 순자산액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불명확함.

(5) 경매사의 금지행위(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안 제10조는 공정하고 신속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농안법」과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일괄 정리하고 있음.

< 경매사의 금지행위 비교 >

「농안법」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82조(허가 취소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상정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제13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하자·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 등과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결정 3. 거래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거나 낙찰시키는 행위 4.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5. 경매순서 조작 6.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	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경매사는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출하자, 중도매인, 매매

「농안법」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p>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p> <p>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경우</p> <p>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p>	<p>터의 금품수수 행위</p> <p>7.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p> <p>8.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p> <p>② 법인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참가인 또는 구매자 등으로 부터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경매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p> <p>5. 거래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시키거나 낙찰시키는 행위</p> <p>6.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부정한 거래행위</p> <p>7. 비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예약형으로 기록하는 행위</p> <p>8.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위반하는 행위</p> <p>9.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행위</p> <p>10.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p> <p>② 도매법인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상장거래에 있어 공정한 가격평가와 경락자 결정 역할을 하는 경매사의 중요성에 비해 「농안법」의 규율이 미흡하여 경매사를 통한 각종 불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가락시장에서만 ▶허위거래와 기록상장, ▶경매가격 조작, ▶

운송비 횡령과 물량 밀어주기 등 경매비리가 64건이 발생하는 등 경매사의 각종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가락시장 내 경매사 관련 행정처분 건수 >

(기준: 2020. 9.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6	8	8	18	9	15	64

- 개정안은 경매사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1조제1항제9호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매사는 물건의 소유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를 경매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여 경매사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농안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제1항제9호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생략) 1, ~ 8, (생략) 9. <u>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행위</u> 10. (생략) ② (생략)	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개정안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9. <삭제> 9.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6)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을 시설현대화 사업, 거래규모, 시설여건, 위생·환경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유통환경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7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법인의 시설 사용면적은 <u>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u>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12조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u>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시설현대화 사업, 거래규모, 시설여건, 위생·환경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개선</u>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u>유통환경 변화</u> 등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시장</u> 이 정한다.

- 현행 조례는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평가결과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증거가 가능한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환경 변화 등” 과 같이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인 조례 적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음.

(7) 도매법인 출하자 장려금 등의 지급(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법인의 장려금 지급범위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동일하게 200/1,000의 범위로 조정하고,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 조정과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한 출하자 보전금 범위를 150/1,000에서 200/1,000으로 상향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도매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p>

- 장려금과 보전금은 도매법인이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 생산활동 지원과

매출 상승을 장려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그 동안 도매법인은 경쟁체제 없이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보고 있으나, 출하자나 중도매인에 대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20년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6개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 합계는 172억 5천 8백만원으로 총 거래금액의 0.43%에 불과했으며, 위탁수수료와 비교해도 4.85%에 그치고 있음.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거래 현황 >

(단위: 천톤, 백만원)

구분	연도	거래물량	거래금액	위탁 수수료	당기 순이익	출하 장려금	판매 장려금
서울청과	2019	360	740,027	34,879	4,640	3,139	4,104
	2020	338	803,645	37,319	7,611	3,427	4,566
농협 가락공판장	2019	208	463,827	21,964	368	1,777	4,419
	2020	204	509,708	23,484	1,363	2,003	4,794
중앙청과	2019	361	764,452	36,445	6,277	3,353	4,019
	2020	341	836,809	38,999	6,714	3,686	4,613
동화청과	2019	392	678,091	32,690	2,277	2,872	4,012
	2020	380	770,438	36,533	5,245	3,285	4,452
한국청과	2019	406	613,984	30,754	4,450	2,600	3,413
	2020	390	692,847	33,734	4,452	2,955	3,920
대아청과	2019	408	283,446	17,473	348	951	2,735
	2020	444	397,281	24,586	5,320	1,902	3,622
합계	2019	2,135	3,543,826	174,204	18,360	14,572	22,701
	2020	2,097	4,010,727	194,656	30,705	17,258	25,966

- 개정안은 출하자에 대한 장려금과 보전금 상한선을 동일시하여 도매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익독점을 막고 출하자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조례 개정사항을 불승인한 바 있어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8)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도매법인 외에 시장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9조(전자거래) ①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로 하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도매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을</p>

현행	개정안
<p>⑤ <신 설></p> <p>④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p> <p>⑥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전자거래는 정가·수의매매에 한해 해당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품질유지, 도매시장 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농안법」에서는 전자거래의 주체나 시스템 구축의 주체 모두를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음.
- 신설되는 안 제14조제2항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매법인에게 강제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자유로운 거래 방식을 제약할 수 있음.
- 공정한 전자거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거래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u>사용하여야 한다.</u> ③ ~ ⑥ (생략)	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u>사용할 수 있다.</u>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 안 제14조제5항은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으로의 반입 예외 사항인 견본거래를 신설하고 있음.
- 견본거래는 전량 장내로 반입해야하는 기존 거래방법에 비해 일부 견본만을 장내로 반입해 견본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 대기시간 축소 등의 장점이 있어 조례에서 견본거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음.

3) 시장도매인(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상한수, 자본금 규모, 지정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1) 시장도매인의 지정(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시장도매인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조건은 도매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음.
- 앞서 도매법인의 지정조건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현행 조례와 달리 경쟁촉진, 공정거래질서, 규격화, 포장개선, 선도유지, 물류개선 등의 추가지정 조건은 도매시장 운영자인 시장도매인에게 요구하기 곤란하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시장관리인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음.

(2)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 등(안 제16조·안 제17조)

-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별표 1]로 청과 75개, 수산 35개, 축산 20개의 시장도매인 상한 수를 신설하고 있음.
-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제의 높은 가격변동성과 유통비용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00년도에 「농안법」에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강서시장에 60개 법인이 영업 중에 있음.
- 그러나 ▶거래과정의 낮은 투명성과 공개성, ▶시장도매인과 출하자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격 왜곡, ▶경매제도의 가격결정 기능 위축 등의 부정적 요소도 존재하고 있음.

<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 장·단점 >

구 분	경 매 제	시장도매인제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 보장 ◦ 법인에 대한 효과적 규제 가능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 ◦ 출하자의 선택권 보장 ◦ 안정적 수취가격 보장 ◦ 신선도 유지 및 감모율 감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존재(기록상장 등) ◦ 유통단계 증가 및 비용 증가 ◦ 가격변동성 심화 ◦ 독과점과 과도한 수익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투명성·공개성 부족 ◦ 가격결정 혼란 및 수취가격 악화 ◦ 대금정산 지연 등 피해 ◦ 가격결정 기능 위축

- 온라인거래의 증가, 대형유통기업의 급성장, 유통경로의 다원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매시장이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통주체간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유통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와 시장개설자,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합의 선행조건을 들어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음.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조례 승인 진행 경과 >

- '12.12.11. 시의회,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시장도매인 자본금 10억(수산 5억), 적정 수 300명(수산 200명)
- '12.12.14. 서울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승인 요청

- '12.12.26.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불승인
 - 자본금 기준 부합, 시장도매인수 과다 의견 제시(적정 수 40개소 이하)
- 농식품부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조건부 승인('13.1.8) 및 이행('13.~'15.)
 - 가. 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정성 확보 → **이행 완료**(정산회사 설립)
 - 나.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 산출
 - **이행 완료**(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도매인 수 및 자본금 산출)
 - 다. 농식품부, 서울시, 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 **미합의**(공청회·대토론회·협의회 약 20회 개최했으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도출 실패)
 - ➔ **1,2항은 이행완료, 3항인 유통주체간 합의 미도출로 시장도매인 도입 보류 중**
- '15.5.29. 서울시, 농식품부에 시 조례시행규칙 개정 승인 요청
 - 개정 내용 : 시장도매인 적정 수 및 자본금 규모 '15.12월 말까지 확정
- '15.6.18. 농식품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불승인
 - 농식품부 조건부 승인사항('13.1.) 중 합의 이행 요건 미달성 이유로 불승인

4)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안 제19조부터 안 제26조까지)

(1) 중도매인의 허가·신고(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중도매인은 부류별로 시장으로부터 허가받고(제1항),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분기 말일(제2항)로 하며,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규격화 등을 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항).
- 또한, 중도매인의 조합 또는 단체 구성 시 신고 기한을 등기 등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10일' 에서 '14일' 로 변경(제5항)하고, 중도매인의 허가 신청 시 공사사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중도매인 점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신설하였음(제8항).

- 이는 중도매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유통주체 간의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상품의 상품성 향상 등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음.
- 다만,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 비해 자본금, 사업영역, 거래금액 등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중도매인에게 도매법인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2) 보조거래참가자 운영(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중도매인의 영업상 편의를 위해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보조거래참가자에 관한 등록과 철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보조거래참가자의 참여방법으로 “입찰”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다양한 매매방법을 반영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 또한 보조거래참가자의 등록·철회에 관한 사항을 공사 내부규정에서 조례로 상향(제3항·제4항)함으로써, 보조거래참가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음.

- 현재 가락시장에 등록된 보조거래참가자는 1,909명(청과부류), 등록철회건은 총 3건임.

5)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안 제27조부터 안 제35조까지)

- 안 제27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산지유통인 등록과 등록 예외, ▶출하자 신고와 출하예약 우대 조치, ▶등급표준화 검사와 조치, ▶수탁거부, ▶구매자 신고와 신고 우대 조치, ▶미신고 구매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산지유통인 등록 등(안 제27조)

- 안 제27조는 도매법인 등이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2항), 미등록 산지유통인의 도매시장 출입 금지·제한(제5항) 등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농안법」에서 정한 도매법인 등의 산지유통인 업무 겸업 금지에 관한 사항(제29조제2항)과 산지유통인 무등록자의 도매시장 출입에 대한 금지·제한(제29조제5항)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임.

(2) 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안 제31조)

- 안 제31조는 조의 제목을 “불량 출하자 제재”에서 “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로 변경하고, 속박이⁴⁾, 수량, 중량 등 농수산물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와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등급과 표시 규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산지와 소비지 간의 신뢰 저하와 클레임 발생으로 도매시장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불량 출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이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농안법」 제38조를 근거로 수탁주체인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의 등급표준화 수행의지를 강화해 불량 출하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
- 다만, 불량출하자 제재 등의 침익적 처분 규정⁵⁾을 조례에 두는 것은 「농안법」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었음⁶⁾.

(3) 수탁거부 등(안 제32조)

4) 겉으로 보이는 바깥쪽만 멀쩡한 물건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그보다 작거나 부실한 물건을 두는 것을 말함.

5) 침익적 행정처분이란 정부나 지자체등의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함.

6)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검토 결과(농림축산식품부-2249, 2015. 6.18)

- 안 제32조는 농안법령(법 제38조,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수탁 거부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p>제24조(수탁거부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표준규격화가 미비하거나, 쓰레기발생 등 도매시장 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고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2조(수탁거부 등) ① 법 제38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하여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p>

- 즉, 도매시장 유통인들의 농수산물 수탁 거부·기피와 거래 관계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농안법」에 따른 ▶ 유통명령 위반 출하, ▶ 출하자 미신고 출하, ▶ 안전성 검사 결과 미달, ▶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 표준규격 미달 등의 경우에 수탁거부를 허용

하는 것임.

- 이는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탁거부 금지 조항을 조례에 일괄적으로 명시하여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임.

6)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등(안 제36조부터 안 제55조까지)

- 안 제36조부터 안 제55조까지는 ▶도매법인의 거래,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불법·부정거래의 금지, ▶강서시장 운영 특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도매법인의 거래 및 매매방법(안 제36조·안 제37조)

- 안 제36조는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하여야 하나, 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 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안 제37조는 도매법인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법을 위반하여 매수·도매하거나, ▶최고가액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거나,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미지정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이상의 조치들은 「농안법」에 명시된 도매법인의 매매방법과 거래 위법 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명시하여 도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안 제38조)

- 안 제38조는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상장예외품목)을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3%미만, 취급 중도매인 소수 품목 외에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품목, ▶특정 도매법인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품목 등을 신설하여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 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음⁷⁾.

시행규칙	개정안
<p>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 	<p>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품목 4. 해당 도매시장에서 특정 도매법인이

7)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은 도매법인의 집하(수집) 능력 부족에 따른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4년 개정된 「농안법」과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도매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로 품목을 지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개정안
하는 품목	<p>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출하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p> <p>5.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p> <p>③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및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은 상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요건을 극히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탈법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예외품목 비율은 9% 수준임.

< 가락시장 거래물량 및 비율 >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2,312,656	2,416,087	2,422,658	2,391,120	2,410,021	2,344,345	2,331,383
상장	2,084,269 (90%)	2,179,347 (90%)	2,200,338 (91%)	2,176,022 (91%)	2,194,178 (91%)	2,145,644 (92%)	2,134,605 (92%)
상장 예외	228,387 (10%)	236,740 (10%)	222,320 (9%)	215,098 (9%)	215,843 (9%)	198,701 (8%)	196,778 (8%)

- 개정안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요건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상장예외 품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소송을 방지하고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위법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안법」상의 도매시장 거래는 도매법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면 중도매인은 상장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도매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논리로 보면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농안법」상 상장거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⁸⁾.
- 또한 기록상장과 허위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지정 사유로 되면,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지정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 거래가 만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
- 또한 안 제4호는 취급 부류에 따라 특정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예: 서울건해), 모든 취급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완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이 요구됨.
- 이 밖에 산지위판장 등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여 중도매인직접거래 지정사유로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의견(2020.11.5.접수)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p>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p> <p>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별로 지정한다.</p> <p>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품목 4. 해당 도매시장에서 특정 도매법인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출하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5.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p>③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및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p> <p>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개정안과 같음) 3. <u>도매시장법인의 집하 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품목</u> 4. <삭 제> 4. <u>산지 위판장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u> <p>③ (개정안과 같음)</p>

(3)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특례(안 제44조)

- 안 제44조는 지방도매시장의 특례운영을 인정하고 있는 「농안법」 제42조의2에 따라 강서시장 특례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이는 도매시장의 규모나 거래물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도매시장의

영업 활성화와 거래물량 증대를 위해서 「농안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매수·도매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 한 것임.

- 또한 「농안법」의 근거 없이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의 특례운영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함.

(4)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안 제51조)

- 안 제51조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1항), ▶ 안전성 검사의 대행(제2항), ▶ 정밀검사 의뢰(제3항), ▶ 출하 제한 기간(제4항), ▶ 출하제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탁·매수 금지(제5항) 등을 규정하였음.
- 공사는 1999년부터 시장 방침에 따라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농안법」의 개정(2007.1)으로 개설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대행(위탁)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음.
- 「지방공기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공기업이 대행할 경우에는 해당 대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제71조).
- 그동안 안전성검사 비용을 공사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정악화로 2021년부터는 서울시가 전액(24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안전성에 문제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기간 (1개월~6개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바(제4항), 이는 「농안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7)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안 제56조)

- 안 제56조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비용의 결정, 안전성 검사 등의 주요 내용을 상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현재 시장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당연직 위원은 서울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 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통인 대표(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8명 이내),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 단체 대표 등(5명 이내), ▶시장 추천 전문가(2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전문가 2명 등(5명 이내), ▶그 밖에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공영도매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과 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공공재이므로, 위원회의 구성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도매시장 내 유통인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대표 간에 첨예한 갈등을 양산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8) 도매시장 시설사용의 규제 등(안 제61조)

- 안 제61조제1항은 시설사용 규제 사유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였을 때(제9호), ▶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로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제10호),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제11호)를 추가하였음.
- 그 외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2항),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지정·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제3항)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시설사용 계약 등에 포함해야 할 중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매 시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됨.
- 다만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 하는 경우” 에도(제10호)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생략) 1. ~ 8. (생략) 9.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였을 때 <u>10. 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로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u> <u>11.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u> ② ~ ⑤ (생략)	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9.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였을 때 <u>10. <삭제></u> <u>10. (개정안과 같음)</u>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9) 보칙(안 제67조부터 안 제69조까지)

- 안 제67조부터 안 제69조까지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의 보고, 검사 및 명령, ▶관련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보고, 검사 및 명령(안 제67조)

- 개정안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해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보고나 거짓보고 금지(제2항), 장부 검사(제3항), 검사 방해금지(제4항), 시장의 조치명령 이행(제6항) 등을 신설 하였음.
- 이는 「농안법령」에서 명시된 검사명령 조항과 처벌조항을 재규정한 것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에 대한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필수 요건임.
- 다만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⁹⁾에서는 도매법인 등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과 범위, 기관, 검사직원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춰 후단을 신설한 필요가 있음.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p>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생략)</p> <p>②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 ⑥ (생략)</p>	<p>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u>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 ⑥ (개정안과 같음)</p>

(2) 권한의 위탁(안 제68조)

- 개정안은 ▶거래품목의 지정, ▶도매법인·시장도매인의 지정, ▶도매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상한 수, ▶최저거래금액 기준 및 관리,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의 지정 등 개설자의 중요 권한을 조례로 정하고, 이외의 사무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처럼 도매시장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개설자인 시장의 권한으로 나열하고 나머지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¹⁰⁾은

10) 규제 원칙을 지칭하는 말로써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과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말함.

시장관리자의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마. 종합의견

- 개정안은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농안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체계는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고 있음.
- 특히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주체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과 소비자·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농안법」은 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업무규정과 관련된 상당 수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조례가 중앙부서 장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을 통한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거래방식의 공공성·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대와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 경매사의 금지행위 규정 중 경매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원산지 표시 위반” 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의 도매법인 의무·사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4조제2항).
- 중도매인의 갱신허가 중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 이상” 과 “3개월 이상” 으로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중 불공정거래 행위 품목 및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를 삭제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영되는 품목을 추가함(안 제38조제2항).

- 도매시장 시설사용 규제 항목 중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폐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61조제1항제10호).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65
----------	---------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을 통한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거래방식의 공공성·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대와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 경매사의 금지행위 규정 중 경매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원산지 표시 위반” 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의 도매법인 의무·사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4조제2항).

- 중도매인의 갱신허가 중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 이상” 과 “3개월 이상” 으로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중 불공정거래 행위 품목 및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를 삭제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영되는 품목을 추가함(안 제38조제2항).
- 도매시장 시설사용 규제 항목 중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폐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61조제1항제1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을”을 “중도매인이 상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목과 기간을 정한 농수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매법인의 상장거래 형식을”을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상장거래의 형식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을 “도매법인”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단서 외의 본문 중 “건설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은”을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도매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으로

본다.

안 제5조제2항 중 “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을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조건 또는 승인 조건” 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이 조제 제5조제2항의” 를 “제5조제2항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를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부진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도매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해당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

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22호 및 제24호 중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및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안 제1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 을 “도매법인은” 으로, “도매법인이 전자 거래를 행하는 경우” 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며,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을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사용하여야 한다.” 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자거래시스템을” 을 “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 시스템을” 으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을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 중 “보증금,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을
“보증금 등 규칙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2호 중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1개월에” 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개월 이상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를 “업무정지 3개월 이상에”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인수·합병의 경우” 를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안 제31조제3항 중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을 “중도매인에게” 로 한다.

안 제3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를 “제1항 단서에 따라” 로, “도매할” 을 “도매하는” 으로 한다.

안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도매법인의 집하 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품목
4.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

안 제6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제67조제3항 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u></p> <p>2. (생략)</p> <p>3. “기록상장”이란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기능을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u>도매법인의 상장거래 형식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u></p> <p>4. “허위거래”란 <u>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출하자가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도매시장의 관리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u>중도매인이 시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목과 기간을 정한 농수산물을 말한다.</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기록상장”이란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기능을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u>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상장거래의 형식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u></p> <p>4. “허위거래”란 <u>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출하자가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도매시장의 관리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p>

조 례 안	수 정 안
<p>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①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p>	<p>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도매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도매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으로 준용한다.</p>	<p>〈삭 제〉</p>
<p>제5조(도매법인의 지정 등) ① (생략)</p>	<p>제5조(도매법인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p>

조 례 안	수 정 안
<p>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생략)</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도매법인의 재지정 등) ① (생략)</p>	<p>제7조(도매법인의 재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등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과 이 조 제5조제2항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등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과 제5조제2항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같은 조항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p>

조 례 안	수 정 안
<p>22호, 같은 조항 제24호 중 각 호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22호 및 제24호 중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및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생략)</p> <p>1. ~ 8. (생략)</p> <p>9. <u>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행위</u></p> <p>10.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p> <p>② (생략)</p>	<p>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8. (개정안과 같음)</p> <p>9. <삭제></p> <p>9.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도매법인이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p>

조 례 안	수 정 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u>사용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도매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u>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⑤ ~ ⑥ (생략)</p>	<p>② <u>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u>사용하게 할 수 있다.</u></u></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도매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u>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⑤ ~ ⑥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u>보험가입,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15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u>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9조(허가·신고)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u>보증금, 시설</u></p>	<p>제19조(허가·신고)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u>보증금 등</u></p>

조 례 안	수 정 안
<p><u>물 사용기준 준수, 위생·환경 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물류개선, 등급표준화 검사·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강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④ ~ ⑧ (생략)</p> <p>제21조(갱신허가)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법 제8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 제82조제5항제2호부터 제10호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4.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허가기간 내에 최하위등급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p>제23조(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p> <p>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p>	<p><u>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④ ~ ⑧ (개정안과 같음)</p> <p>제21조(갱신허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8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 제82조제5항제2호부터 제10호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4. <삭제> <p>제23조(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p> <p>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p>

조 례 안	수 정 안
<p>를 위하여 중도매인 간 <u>인수·합병의 경우</u>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를 위하여 중도매인 간 <u>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u>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31조(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불량 출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u>중도매인으로 하여금</u>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31조(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불량 출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u>중도매인에게</u>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36조(도매법인의 거래)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라</u> 매수하여 <u>도매할</u> 경우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36조(도매법인의 거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제1항 단서에 따라</u> 매수하여 <u>도매하는</u> 경우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품목</u></p> <p>4. <u>해당 도매시장에서 특정 도매법인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출하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u></p>	<p>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3. <u>도매법인의 집하 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품목</u></p> <p>4. <삭제></p>

조 례 안	수 정 안
<p><u>품목</u></p> <p>5. 그 밖에 <u>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u></p> <p>③ (생략)</p> <p>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생략)</p> <p>1. ~ 9. (생략)</p> <p>10. <u>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로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u></p> <p>11. <u>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u></p> <p>② ~ ⑤ (생략)</p> <p>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 ② (생략)</p> <p>③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④ ~ ⑥ (생략)</p>	<p>4. <u>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u></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9. (개정안과 같음)</p> <p>10. <삭제></p> <p>10. <u>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u></p> <p>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④ ~ ⑥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 개선,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상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목과 기간을 정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2.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 품목의 거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기록상장”이란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기능을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 이라 한다)의 상장거래의 형식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4. "허위거래"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출하자가 실제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하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매시장의 관리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 정기 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도매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은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경매사·산지유통인 등"으로 본다.

제2장 도매법인

제5조(도매법인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법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매법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도매법인의 상한 수) ① 도매법인(도매시장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도매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매법인의 재지정 등) ①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등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과 제5조제2항의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부진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도매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해당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해당 지정기간 내 법 제82조제2항제22호 및 제24호 중 동일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해당 지정기간 내 제4호 및 제5호 각 행정처분 근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도매법인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도매법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도매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별표 2과 같다.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소속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도매법인의 거래보증금 납부 및 반환, 순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매법인의 관리) ① 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 농산물도매시장·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매법인의 휴·폐업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법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도매법인은 경매사를 임명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경매사는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또는 구매자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경매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

5. 거래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시키거나 낙찰시키는 행위

6.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부정한 거래행위

7. 비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예약형으로 기록하는 행위

8.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9.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도매법인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시설현대화 사업, 거래규모, 시설여건, 위생·환경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유통환경 변화 등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

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①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 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 및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로 하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도매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도매법인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견본거래를 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 ⑥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시장도매인

- 제15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법 제36조에 따라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① 시장도매인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시장도매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보증금 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시장도매인의 관리, 시설사용면적 결정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하며, 이 경우 “도매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 근거 법·조례 조항은 법 제36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제19조(허가 · 신고)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분기 말일로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 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중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⑦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중도매인, 중도매인 점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중도매인의 상한 수) ①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품목 특성에 따라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을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갱신허가) ① 제19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 제82조제5항제2호부터 제10호 중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해당 허가기간 내에 5회 이상 받은 경우

제22조(보조거래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거래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귀속된다.

③ 시장은 보조거래참가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보조거래참가자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1. 점포 전대 및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등에 관여한 경우

2.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거래 등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거래질서 유지, 위생·환경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 ④ 시장은 중도매인의 보조거래참가자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중도매인에 대하여 보조거래참가자 신규 등록 제한 또는 등록 가능 인원 수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보조거래참가자의 등록 및 철회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 간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위한 중도매인 평가결과 또는 추천을 통해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매인 평가 및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준용) 중도매법인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법인“은 “중도매법인“으로 본다.

제25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매참가인의 신고 및 철회, 거래참가 제한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도매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의 보조거래참가자 운영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

제2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도매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3. 도매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4.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매매하는 경우
5.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법인이 다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제29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출하예약 우대 조치) 시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제27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 또는 제29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한 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 ① 시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직접 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속박이·수량·중량 등 품질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의, 경고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량 출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 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수탁거부 등) ① 법 제38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하여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구매자신고)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매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구매자신고 우대 조치) 시장은 구매신고자에 대하여 주차 우대, 전용 주차공간 지정, 정기적 시장정보 제공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미신고 구매자 제재) 시장은 농수산물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미신고 구매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금지 또는 주차료 감면 제외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제36조(도매법인의 거래) ① 도매법인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도매법인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제37조(매매방법) ① 도매법인은 법 제32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출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거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는 행위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행위
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
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6.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7.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③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매수, 위탁 또는 중개를 할 때에는 출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방법 및 절차, 품목별 경매시각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도매법인의 집하 능력 부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품목
4.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

③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및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거래정보 보고 등) ① 시장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대금정산조직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매방법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 거래정보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0조(거래 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매 등 거래 참가를 거부해서는 아니되고 거래 참가 시에는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 ②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 등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도매시장의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등을 접수·처리한다.

③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3조(거래특례) ①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 도매법인·시장도매인, 기간 및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를 한 때에는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특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판매원표 등 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대금정산조직의 운영방법 및 관리 등) ①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에

따라 시장은 대금정산조직의 대표자에게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의 형식, 운영, 관리 및 대금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도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도매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공사, 다른 도매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업무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8조(하역업무)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전액 부담한다.

③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하역 전문업체 등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매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도매인은 중도매업이 허가된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중개 또는 판매하거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1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및 속성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및 속성 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공사사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⑤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제한을 받은 출하자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출하제한 기간 동안 수탁 또는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시장이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료 수거 및 폐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파견 할 수 있다.

제52조(반입물품의 제한 등) ①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수탁 등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물품이

식품위생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할 수 없다.

제55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제56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8조 및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유통인대표(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3. 생산자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4.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7조(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도매시장 시설 등

제59조(도매시장 시설사용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60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①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을 승인 받거나 계약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중도매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 점포 전차인 등에 대하여 보조거래참가자 등록 철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사용기준 등 도매시장 시설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1조(시설사용의 규제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9.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였을 때
10.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②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 시설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지정·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하역단체 노동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설사용의 규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2조(대집행 및 보수명령) ① 시설사용자가 제63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위생·환경유지) ①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명령 등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구매자 등 누구에게나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물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5조(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폐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66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기준 및 조치계획 등을 사전에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사용 시설의 면적·위치 조정 및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67조(보고, 검사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

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은 제5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8조(권한의 위탁) 법 제21조 및 제85조제2항 등에 따라 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
2. 제5조에 따른 도매법인의 지정
3. 제6조에 따른 도매법인 상한 수
4. 제7조에 따른 도매법인의 재지정
5. 제8조에 따른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6.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매법인의 관리
7. 제9조제3항에 따른 도매법인의 휴·폐업 신고
8. 제1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
9. 제1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10.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

11.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
12. 제18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제19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및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14. 제20조에 따른 중도매인 상한 수
15. 제24조 따른 중도매법인의 관리
16. 제38조에 따른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의 지정
17. 제62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항
18.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
 - 경고를 제외한 행정처분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